

## 교내 설치물 관리에 관한 내규

제정 2013. 11. 04  
개정 2016. 03. 09

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홍보 및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교내 설치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“홍보게시물”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현수막, 벽보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.
- “게시시설”이라 함은 계시대, 게시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게시물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
- “설치물”이라 함은 특별한 목적으로 일정기간 교내에 설치된 시설물로 천막, 간이시설 등을 말한다.
- “지정게시판”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설치한 게시판을 말한다.

**제3조(관리책임자)** ① 각 행정부서 및 외부기관에서 설치하는 교내 설치물의 관리책임자는 사무처장으로 한다.

**제4조(제한사항)**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- 본교의 교육 목적에 반하거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내용
  -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
  -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
  - 상업광고 등 영리를 목적하는 내용
  -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내용
  - 지정 게시판 또는 게시시설 이외에 장소에 설치한 경우
  - 게시기간이 경과된 내용
  - 관리책임자에 의해 허가되지 아니한 내용
- ② 1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게시 및 설치물은 자진 철거를 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 시 학교당국에서 철거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범위)** ① 설치물을 게시 및 설치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학교정책 공지 및 홍보
- 본교 내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및 이에 준하는 행사
- 입시 홍보 및 취업 관련 행사
- 기타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행사

**제6조(설치장소)** ① 삭제

- 홍보게시물 및 설치물은 온 학교당국에서 정한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.
- 대학정문에는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7조(기간)** ① 홍보게시물의 게시기간은 1주일 이내로 한다. 단 부득이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연장하며 전체기간은 2주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설치물은 사전에 설치기간을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며, 관리책임자가 철거를 명할 시 즉시 처리해야 한다.

**제8조(허가)** ① 모든 홍보게시물 및 설치물은 사전 검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.

-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식 제1호의 설치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사전 검인은 사무처 총무부에서 담당을 하며, 위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게시물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홍보게시물 및 설치물을 설치한 개인 및 단체는 정한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당 게시물 및 설치

물을 자진 철거하여야 하며, 자진 철거되지 않거나 본 규정에 위반되는 게시물 및 설치물은 관리책임자가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.

**제9조(학생관련 홍보게시물)** 학생관련 홍보게시물은 본교 「학생홍보물게시에관한준칙」에 의거한다.

**부칙** (총무부-979, 2013.11.4.)

이 내규는 201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총무부- 275, 2016.03.09)

이 내규는 2016년 3 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[서식 1호]

## 설치물 신청서

|             |   |  |      |  |
|-------------|---|--|------|--|
| 종류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현수막 <input type="checkbox"/> 벽보 <input type="checkbox"/> 천막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 |  |      |  |
| 규격/크기/수량    |   |  |      |  |
| 장소          |   |  |      |  |
| 기간          | 20 . . . ~ 20 . . . (일간)  |  |      |  |
| 내용          |   |  |      |  |
| 계<br>시<br>자 | 성명/단체명  |  |      |  |
|             | 계시 및 설치 책임자   |  |      |  |
|             | 연락처   |  | 휴대폰: |  |

위와 같이 신청하며, 본 계시물 및 설치물의 정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대학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.

2016. . .

신청인 : 부서장 (서명)

| 결<br>재 | 담당 | 과장 | 부장 | 처장 | 총장 |
|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  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